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65
----------	-----

2023. 12. 12.(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진희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11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11월 30일

-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2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1조,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수정(안 제11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 (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현행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피부관리’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나목(피부미용업)에 적용되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함.
- 인용조항 중에서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지번호를 반드시 명시⁷⁾해야 하므로 현행 조례 제2조제4호가 아래 법령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문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함.

참 고	
입법례	
<p>□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 <p>제115조(권한의 위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p> <p>6. 법 제91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p>	
현행	개정안
<p>4.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정한化妆품을 말한다.</p>	<p>3.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p>

7)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71쪽 각주 284) 참조, 법제처

- 현행 조례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제10조제3호⁸⁾의 조문을 고려하여 제3조제2호의 ‘뷰티산업인력’을 ‘뷰티산업 전문인력’으로 정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현행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 기관, 단체”란 문구가 쉼표로만 연결되어 있기에 마지막 쉼표를 “및”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⁹⁾
- 현행 조례 제9조에서 “충청북도뷰티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뷰티산업진흥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에, 제10조(기능) 각 호의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수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10조제1호의 “뷰티산업진흥시행계획”이라는 문구를 제3조에 따라 “뷰티산업진흥기본계획”으로 정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
- 제11조제3항의 근거 조례인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함.
- 개정안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고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3. 11. 21. ~ ‘23. 11. 2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8) 제10조제3호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뷰티산업의 창업·경영·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판)」 부록 25쪽 정비대상용어 1377번 참조, 법제처

4. 검토의견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점, 조례 개정의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육성하여 도민들”을 “육성함으로써 충청북도민”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을 말한다.
2. “미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을 말한다.
3.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4.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이용업·미용업 및 헬스케어 산업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산업
 - 나. 화장품·미용기기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산업
5.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뷰티산업제품” 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뷰티산업진흥” 을 각각 “뷰티산업진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뷰티산업인력” 을 “뷰티산업 전문인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창업·경영” 을 “창업·경영”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내·외” 를 “국내외” 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뷰티산업진흥” 을 각각 “뷰티산업 진흥” 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뷰티산업의 진흥사업” 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문 인력” 을 각각 “전문인력”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뷰티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지원 등)” 을 “(뷰티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 을 “기관 및”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 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도내 뷰티산업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도내 중소 뷰티사업자에 대하여” 를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 라 한다) 내 중소 뷰티사업자의” 로, “판매촉진을 위한 각종” 을 “도내에서 생산되는 뷰티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으로, “지원 할” 을 “지원할” 로 한다.

제9조 앞에 “제3장 뷰티산업 진흥위원회” 를 삭제한다.

제9조 중 “뷰티산업진흥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을 “뷰티산업의 진흥” 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심의·자문한다”를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뷰티산업진흥시행계획”을 “뷰티산업진흥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련기관·단체”를 “관련 기관·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뷰티산업육성”을 “뷰티산업 육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위원회에서”를 “도지사가 뷰티산업 진흥과 관련하여”로, “인정되는 뷰티산업 진흥 관련”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를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임기의”를 “전임자 임기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를 “(위원의 위촉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解囑)”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解囑)”으로 한다.

제16조 중 “담당부서”를 “진흥 업무”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p> <p>가. <u>이용업·미용업과 피부관리, 헬스케어 등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u></p> <p>나. <u>화장품·미용기기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u></p> <p>다. <u>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u></p> <p>2. <u>이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업을 말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1조(목적) ----- ----- <u>육성함으로써 충청북도민-----</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이용업</u>”이란 「<u>공중위생관리법</u>」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u>이용업</u>을 말한다.</p> <p>2. “<u>미용업</u>”이란 「<u>공중위생관리법</u>」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u>미용업</u>을 말한다.</p>

3. 미용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을 말한다.

4.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정한化妆품을 말한다.

5.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뷰티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3.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4.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미용업·미용업 및 헬스케어 산업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미용기기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산업

5.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뷰티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

“도지사”라 한다)는 뷰티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뷰티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뷰티사업자의 창업 ·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5. (생략)
6. 뷰티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7. 뷰티산업진흥을 위한 투자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뷰티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뷰티산업의 진흥사업

제4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 뷰티산업 진흥-----

② -----

1. 뷰티산업 진흥-----
2. 뷰티산업 전문인력-----
3. ----- 창업 · 경영 -----
4. 5. (현행과 같음)
6. ----- 국내외 -----
7. 뷰티산업 진흥-----
8. ----- 뷰티산업 진흥-----

<삭제>

제4조(전문인력 양성) ① -----

전문인력-----

② ----- 전문인력-----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5조(뷰티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지원 등) (생략)

제6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뷰티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3. (생략)

② (생략)

제8조(뷰티박람회 운영·지원 등)

①·② (생략)

③ 도내 뷰티산업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도내 중소 뷰티사업자에 대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뷰티산업 진흥위원회

-----.

제5조(뷰티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현행과 같음)

제6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
---- 기관 및 -----
-----.

1.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뷰티박람회 운영·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 뷰티사업자의 -----
---- 도내에서 생산되는 뷰티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 지원할 --
-----.

<삭 제>

제9조(뷰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뷰티산업진흥 및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
청북도뷰티산업진흥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뷰티산업진흥시행계획의 수
립·시행·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뷰티산업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4. (생략)
5. 뷰티산업육성과 관련된 기관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뷰티산업 진흥 관련 사항

제11조(구성) ①·② (생략)

③ 도지사는 위원회 구성시 여
성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

제9조(뷰티산업진흥위원회 설치)
----- 뷰티산업의 진흥-----

-----.

제10조(기능) -----
---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뷰티산업진흥기본계획-----

--
2. ----- 관련 기관·단체 --

3. 4. (현행과 같음)
5. 뷰티산업 육성-----

6. ----- 도지사가 뷰티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
----- 인정하는 --
--

제11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
례」-----

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임기) ①·② (생략)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에 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뷰티산업 담당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전임자 임기의 -----.

제1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촉(解囑)-----
-----.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촉(解囑)-----.

제16조(간사) -----

----- 진흥 업무 -----.

<삭제>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4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화장품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化妆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2의2.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